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대 기 환 경 보 전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저공해자동차에서 무공해자동차 중심으로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3년부터 부과예정인 기여금** 관련하여 감액조건 부과기준, 납부기한 연장사유 등 세부사항 마련 필요

*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전체 차량 판매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저공해차로 판매하도록 의무(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부과(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

** 보급목표 미달성한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부과(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4)

3. 주요내용

가. 제3종 저공해자동차 정의 삭제(안 제1조의2제3호)

1) 저공해자동차 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제3종 저공해자동차(LPG 등)를 삭제

나. 법령 제58조의4항에서 위임한 기여금관련 내용 신설(안 제52조의4, 제52조의5)

1) (상한 기준) 기여금 상한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연도에 1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판매하여 얻은 매출액”으로 정의(안 제52조의4제1항)

2) (가산금 규정) 「지방세징수법」 제30조, 제31조 준용(안 제52조의4제2항)

3) (감액 규정) 감액 가능 사유 근거 규정 및 법 제76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과 기여금의 합이 각 매출액 중 더 큰 값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는 범위에서 부과되도록 규정 신설(안 제52조의4제3항)

4) (부과기준 등) 부과방식, 단계적 부과 근거, 납부기한 연장 사유, 실적
초과분 활용 가능 근거 규정 및 별표 신설(안 제52조의5, 별표12의3)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중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를 삭제한다.

제52조의4 및 제52조의5를 각각 제52조의6 및 제52조의7로 하고, 제52조
의4 및 제5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4(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산정방법 등) ① 법 제58조의4제1
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법 제58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
한 연도에 1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판매하여 얻은 매
출액을 말한다.

② 법 제58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기여금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기여금의 1만분
의 7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58조의4제5항에 따른 기여금 감액수준은 법 제76조의6제1항
에 따른 과징금과 기여금의 합이 법 제58조의4제1항에 따른 매출액과
법 제76조의6제1항에 따른 매출액 중 더 큰 값에 100분의 1을 곱한 금
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2조의5(기여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58조의4제1항에 따른 기여금은

해당 연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미달성 실적에 단위금액을 곱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단위금액은 연도에 따라 별도 요율을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연도별 단위금액과 산정방법 등은 별표 12의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기여금은 3년 이내에 납부해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납부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1. 기여금 납부기한 직전 연도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또는 납부기한 직전 3개년도 영업이익의 합이 순손실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환경부장관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서 정하는 납부기간 이내에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 초과분을 납부해야 할 기여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기여금을 부과할 때에는 법 제58조의4제6항에 따라 기여금이 부과된 연도에 기여금의 부과사유와 그 기여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기여금 납부 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3년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납기관에 해당 기여금을 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기여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기여금을 낸 기여금 납부

의무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서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절차, 납부수단 등 기여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2의2 비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판매수량은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 제출 대상 회계연도의 4개년 전 1월 1일부터 전전년도 12월 31일까지 판매한 수량을 말한다.

(단, 회계연도의 전년도 판매수량이 최근 3년간 평균 판매수량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판매수량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별표 12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2의3]

기여금 산정방법(제52조의5 관련)

1. 자동차판매자별 기여금 금액은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연도(이하 “해당 연도”라 한다)의 미달성 실적에 법 제58조의3에 따라 이월·거래 또는 전환한 양을 감(減)하여 산정한 값을 기여금 단위금액(원/점)에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의 미달성 실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text{미달성 실적} = \text{보급목표} - \text{실제 보급 실적}$$

가. 보급목표 및 보급실적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고시에 따른 값을 말한다.

3. 해당 연도별 기여금 요율 및 단위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해당연도	요율(%)	단위금액(원/점)
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0	600,000
나. 2026년부터 2028년까지	50	1,500,000
다. 2029년 이후	100	3,000,000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의2(저공해자동차의 종류)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1. 2. (생략) 3. 제3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는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u><신설></u>	제1조의2(저공해자동차의 종류) - ----- ----- ----- ----- ----- 1. 2. (현행과 같음) <u><삭제></u> 제52조의4(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산정방법 등) ① 법 제58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법 제58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연도에 1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판매하여 얻은 매출액을 말한다.

<신 설>

② 법 제58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기여금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기여금의 1만분의 7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58조의4제5항에 따른 기여금 감액수준은 법 제76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과 기여금의 합이 법 제58조의4제1항에 따른 매출액과 법 제76조의6제1항에 따른 매출액 중 더 큰 값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2조의5(기여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58조의4제1항에 따른 기여금(이하 “기여금”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미달성 실적에 단위금액을 곱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단위금액은 연도에 따라 별도로 요율을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연도별 단위금액과 산정방법 등은 별표 12의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기여금은 3년 이내에 납부해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납부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1. 기여금 납부기한 직전 연도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또는 납부기한 직전 3개년도 영업이익의 합이 순손실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환경부장관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서 정하는 납부기간 이내에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 초과분을 납부해야 할 기여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기여금을 부과할 때에는 법 제58조의4제6항에 따라 기여금이 부과된 연도에 기여금의 부과사유와 그 기여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법 제58조의4제1항에 따른 기여금 납부 의무자(이하 “기여

금 납부 의무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기여금 납부 의무자는 그 통지
를 받은 시점부터 3년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납기관에 해당 기여금을 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기여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기여금을 낸 기여금
납부의무자에게 영수증을 발급
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서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절차, 납부수단
등 기여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
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연 락 처	(044) 201 - 6948